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압축가스설비”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처리설비로부터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압축가스설비의 위치 변경, 압축가스설비의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용량 또는 수량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압축가스설비의 수량 또는 용량의 감소

별표 4 제1호가목10)나) 중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를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이하“수소법”이라 한다)제44조”로 하고, 같은 목 10)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바목의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별표 5 제1호가목1) 나) 중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을 “보호시설이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거나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 하며, 같은 목 10)가) 중 “제17조”를 “제17조 및 「수소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목 10)에 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할 것

①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위치 변경, 수량, 용량 또는 능력의 증가만을 말한다)

라) 「수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바목의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가스용 튜빙(tubing:배관)은 별표 31 제4호다목7)에 따른 튜빙
(tubing:배관)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하도록 할
것
별표 5 제2호가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시설이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거나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설
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저장설비의 출입구는 제외한다)을
설치할 것
별표 5 제2호가8)(중전의 7)) 중 “제1호가목(3)가)·3)나)·3)라)·6)가)·7)가)는
제외한다]”를 “1호가목” 및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8)(중전의 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가목1)나)·3)가)·3)나)·3)라)·6)가)·7)가)는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나목4) 중 “제1호나목[1)가)·1)나)·2)라)는 제외한다]”를 “제1호
나목” 및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목2)라)는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제1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나)·1)마)·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를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4) 및 제1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마)·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0)가) 및 제2호가목8)나) 중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를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 및 「수소법」 제44조”로
하고, 제1호가목10)다) 및 제2호가목8)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수소법 시
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바목의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할 것

별표 9 제2호가목9) 제목 외의 부분을 가)로 하고, 같은 목 9)에 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수소법」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
일 것

다) 「수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수소법 시
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바목의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할 것

별표 31 제4호 가목1) 중 “ 안전관리원(2), 5) 및 6)의 자는 제외한다]”를
“안전관리원(2), 5), 6) 및 7)의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별표 31 제4호 다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7) 튜빙(tubing:배관) 시공자가 되려는 사람

별표 31 비고의 2의5 및 2의6을 각각 2의6 및 2의7로 하고, 2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가목7)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 나목 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9호,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나)·10)다)·제2호가목 및 다목1)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가목10)나)·다), 별표 5 제1호가목10)가)·라), 별표 8 제1호가목10)가)·다) 및 제2호가목8)나)·다), 별표 9 제2호가목9)의 개정 규정: 2022년 2월5일
3. 별표 31 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4.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 2024년 1월1일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는 고압가스자동차 충

전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가목1)나)·10)다)① 및 제2호가목4)·8)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는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가목1)나)·10)다)② 및 제2호가목4)·8)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교체 또는 변경을 한 경우(위치 변경, 수량, 용량 또는 능력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고압가스 제조, 고압가스자동차 충전, 고압가스 저장 및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가목 10)나)·다), 별표 5 제1호가목10)가)·라), 별표 8 제1호가목10)가)·다), 별표 9 제2호가목9)나)·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 조치) 별표 31 제4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종전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1 제4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28. (현행과 같음) <u>29. “압축가스설비”란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처리설비로부터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 설비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① ----- ----- ----- ----- ----- -----

현행	개정안
는 제외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 ⑤ (생략)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7. (현행과 같음) <u>8. 압축가스설비의 위치 변경, 압축가스설비의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u> 9. ----- <u>10.</u>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2.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u>라.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용량 또는 수량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압축가스설비의 수량 또는 용량의 감소</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

현행	개정안
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관련)	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관련)
1. 특정제조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기준	10) 그 밖의 기준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용기 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제44조에 ----- ----- -----
<u><신설></u>	<u>다) 「수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수소법 시행규칙」</u>

현행	개정안
	<u>별표 5 제1호라목·바목의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u>
[별표 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 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 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 호 관련)	[별표 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 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 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 호 관련)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수소 를 제조·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수소 를 제조·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1) 배치기준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u> <u>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u> <u>같다) 및 압축가스설비</u> <u>로부터 30m 이내에 보</u> <u>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u>	나) <u>보호시설이 처리설비(충</u> <u>전설비는 제외한다. 이하</u> <u>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u> <u>가스설비로부터 30m 이</u> <u>내에 있거나 사업소 안에</u>

현행	개정안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 비의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 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 벽을 설치할 것	<u>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u> ----- ----- ----- ----- ----- -----
다) ~ 사) (생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기준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 는 제품이 법 <u>제17조</u> 에 따라 검사 또는 법 제18 조의4에 따른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 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 나 인증을 받은 것일 것	가) ----- ----- <u>제17조</u> 및 <u>「수소법」 제44조에</u> ---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u>

현행	개정안
	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할 것 ①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위치 변경, 수량, 용량 또는 능력의 증가만을 말한다) 라) 「수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소용품에 대하여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 3) (생략) <신설>	는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바목의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가스용 튜빙(tubing:배관)은 별표 31 제4호다목7)에 따른 튜빙(tubing:배관)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하도록 할 것 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시설이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거나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

현행	개정안
	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저장설비의 출입구는 제외한다)을 설치할 것
4) 저장설비의 설치 대수는 3대 이하로 한다.	5) -----.
5)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위한 탭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
6) 처리설비와 압축가스설비 및 차량에 고정된 각각의 용기에는 그 설비안의 압	7) -----

현행	개정안
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7) 그 밖의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3)가)·3)나)·3)라)·6)가)·7)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단서 신설>	8) ----- 제1호가목-----
나. 기술기준	-----것. 다만, 제1호가목1)나·3)가)·3)나·3)라)·6)가)·7)가)는 제외한다.
1) ~ 3)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의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 [1)가·1)나)·2)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단서 신설>	4) ----- 제1호나목-----
	-----것. 다만, 제1호나

현행		개정안	
다. 검사기준 1) (생략)		목2)라)는 제외한다. 다. 검사기준 1) (현행과 같음)	
검사 종류	검사항목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중간검사	제1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나)·1)마)·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4)바)(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한다), 5)마)(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한다), 5)바)(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한다)	가) 중간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4) 및 제1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마)·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
나) 완성검사	(생략)	나) 완성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다) 정 기검사	(생략)	다) 정 기검사	(현행과 같음)
라) 수 시검사	(생략)	라) 수 시검사	(현행과 같음)
2) (생략)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 9) (생략) 10)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 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생략) <신설>		2) (현행과 같음)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기준 가) -----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 및 「수소법」 제4조에 ----- ----- 나) (현행과 같음) 다) 「수소법」 제2조제8호에	

현행	개정안
	<u>다른 수소용품에 대하여</u> <u>는 「수소법 시행규칙」</u> <u>별표 5 제1호라목·바목의</u> <u>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u> <u>조치를 마련할 것</u>
2. 특정고압가스 사용	2. 특정고압가스 사용
가.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기준	8) 그 밖의 기준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의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	나) ----- 설
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u>치·사용하는 제품이 법</u>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	<u>제17조 및 「수소법」 제4</u>
한 것일 것	<u>4조에</u> -----
<신설>	-----
	다) 「수소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 5
	<u>제1호라목·바목의 시설기준</u>

현행	개정안
	<u>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u>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기준	9) 그 밖의 기준
가목 1)부터 8)까지의 시설기준 외에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가) -----
<신설>	-----

	나)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설치·
	사용하는 제품이 「수소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 51조제1항 관련) 1. ~ 3. (생략)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 「수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바목의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 51조제1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2), 5) 및 6)의 자는 제외한다]	(생략)	가. 전문교육	1) ----- -- <u>안전관리원</u> [2), 5), 6) 및 7)의 자는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u>	

현행			개정안		
				<u>책임자·안전관리원</u>	
나. 특별교육	1) ~ 5) (생략)	(생략)	나. 특별교육	1)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양성교육	1) ~ 5) (생략)		다. 양성교육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u>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u>	
	<u><신설></u>			7) <u>튜빙(tubing:배관) 시공자가 되려는 사람</u>	
비고 1. ~ 2의4. (생략) <u><신설></u>			비고 1. ~ 2의4. (현행과 같음) <u>2의5. 가목7)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 나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u>		
<u>2의5.</u> 나목4)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u>2의6.</u> ----- ----- -----		
<u>2의6.</u> 나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1)의 교육대상자가			<u>2의7.</u> ----- -----		

현행	개정안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 7. (생략) <신설>	----- ----- 3. ~ 7.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9호,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나)·10)다)·제2호가목 및 다목1)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가목10)나)·다), 별표 5 제1호가목10)가)·라), 별표 8 제1호가목10)가)·다) 및 제2호가목8)나)·다), 별표 9 제2호가목9)의 개정 규정: 2022년

현행	개정안
	2월5일 3. 별표 31 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4.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 규정: 2024년 1월1일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는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가목1)나)·10)다)① 및 제2호가목4)·8)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는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가목1)나)·10)다)② 및 제2호가목4)·8)의 개

현행	개정안
	<u>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교체 또는 변경을 한 경우(위치 변경, 수량, 용량 또는 능력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적용한다.</u> <u>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고압가스 제조, 고압가스자동차 충전, 고압가스 저장 및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가목 10)나)·다), 별표 5 제1호가목10)가)·라), 별표 8 제1호가목10)가)·다), 별표 9 제2호가목9)나)·다)의</u>

현행	개정안
	<u>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제4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 조치)</u> <u>별표 31 제4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종전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1 제4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u>